

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결정(안)에대한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0. 17.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10. 17.

다. 상 정 일 자 : 2002. 11. 1.(제106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 의견서채택)

2. 제안설명의 요지(도시개발과장 김윤성)

가. 제안이유

-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은 폐기물(폐유)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 재활용.

나. 주요골자

- 시 설 명 : 폐기물처리시설(일반 및 지정폐기물)
- 위 치 :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27-1번지 일원
- 용도지역 : 일반공업지역(항만시설보호지구)
- 면 적 : A = 4,085m²
- 신 청 자 : 거림환경산업(주) 지문규

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4. 토 론 요 지 : 생 략

5. 심 사 결 과 : 의견서채택

붙임 : 의견서 1부.

-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결정(안)에 대한 -
의 건 서

1. 도시계획시설 개요

- 가. 시설명 : 폐기물처리시설(일반 및 지정폐기물)
- 나. 위치 :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27-1번지 일원
- 다. 용도지역 : 일반공업지역, 항만시설보호지구
- 라. 면적 : 4,085㎡
- 마. 신청자 : 거림환경산업(주) 대표 지문규

2. 청취안에 대한 의견

- 본 건은 폐유 정제를 통한 에너지 재활용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결정 신청하는 사항으로
-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득한 사실이 있고 또한, 시설결정 대상지의 경우 현재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의 기존 부지로서 토지용도의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
-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은 각종 공해 배출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다수 주민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한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 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, 또한 시설 결정 후 폐기물 처리과정에 있어서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보관 창고시설의 개·보수 및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항구적 대책수립등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2002. 11. .

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